

#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
----------	----

2014년 9월 24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년 9월 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5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4년 9월 23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 의 승)

### 가. 제출이유

-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·시행(‘13. 12. 12)됨에 따라,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직종개편)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등
  - “계약직공무원규정” → “지방공무원임용령”, “계약직공무원” → “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변경, 여비조례(표준안)과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.
- 직종개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한 태 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“계약직 공무원”이 “임기제일반직 공무원”으로 전환 되는 등 「지방공무원법」 이 공무원 직종 개편 등의 내용으로 개정 (2013. 12. 12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존 조문 중 법령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“계약직공무원규정 → 공무원임용령”, “계약직공무원 →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변경

※ 또한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(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).

-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조례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약칭 규정(이하 “시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약칭 규정을 제2조의 관련 조문에 규정하였으며, 본 조례가 2008년 개정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 띄어쓰기 등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일부 용어 정리 외에는 별다른 입법사항은 없음.

〈조문 정비 사항〉	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	→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- 소속 장관	→ 소속 장관
- 소속기관의 장	→ 소속 기관의 장
- 행정안전부장관	→ 안전행정부장관
-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	→ 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
- “공무원보수규정”	→ “공무원 보수규정”

- 안 제4조제7호 중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에서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

이는 「공무원임용령」 과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부득이하게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며, 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음.

「공무원 임용령」	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<p>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일반임기제공무원</b>: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</li> <li>2. <b>전문임기제공무원</b>: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</li> <li>3. <b>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</b>: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(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</li> <li>4. <b>한시임기제공무원</b>: 법 제7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0조제2항·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</li> </ol>	<p>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일반임기제공무원</b>: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</li> <li>2. <b>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</b>: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(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</li> <li>3. <b>한시임기제공무원</b>: 법 제6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3항·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</li> </ol>

- 다만, 안 제4조제7호 중 법령 인용규정에 대하여 큰따옴표(“ ”)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나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르면 타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(「 」)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, 금번 개정안 중 법령 인용 규정들을 낫표(「 」)로 수정하고, 또한 안 제4조 본문에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“영”으로 약칭규정 하였으므로 다른 각 호와 같이 ‘영’으로 통일하여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〈수정 의견 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	수정 의견
<p>7. 영 별표 1의 규정 중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으로,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본다.</p>	<p>7. <u>공무원여비규정</u>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공무원임용령”은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</p>	<p>7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으로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- 그 밖에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은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“계약직” 용어 및 기존 계약직 관련 법령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기술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나, 금번 개정안에 누락된 정비가 요망되는 조례 목록은 아래와 같음.

※ 개정안 부칙 중 직종 개편에 따른 타 법규 정비 대상 조례

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

### 〈계약직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 목록〉

#### ①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

제18조(설치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 (이하 “보호관”이라고 한다)을 둔다.

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.

#### ② 「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」

제7조(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)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,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,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전임계약직 마등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.

#### ③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)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④ 「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」

제5조(연구원 및 보조원) ① 위원회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임연구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전임연구원은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

⑤ 「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기관장의 채용 등) ①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·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
②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2년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지방직영기업의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다.

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7조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13조(임용권의 위임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

제15조(근무실적 평가)

② 기관장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제8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다른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(「)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, 안 제4조 본문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“영”으로 약칭규정 하였으므로 ‘영’으로 통일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은 “영”으로 하며,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, 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, “공무원보수규정”,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, “공무원임용령”,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의 큰 따옴표(“ ”)는 낫표(「 」)로 함(안 제4조 제7호).

**7. 심 사 결 과** : **수정안 가결**(재석위원 10명, 전원일치).

**8. 소수의견의 요지** : **없 음.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**없 음.**

#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6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9월 30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다른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(「)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완 하고, 안 제4조 본문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“영”으로 약칭규정 하였으므로 ‘영’으로 통일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은 “영”으로 통일하며,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, 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, “공무원보수규정”,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, “공무원임용령”,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의 큰 따옴표(“ ”)는 낫표(「)로 함(안 제4조제7호).



#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7호 중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은 “영”으로 하고,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, 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, “공무원보수규정”,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, “공무원임용령”,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의 큰 따옴표(“ ”)는 낫표(「 」)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, 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는 “영”이라 한다)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7. 영 별표 1의 규정 중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으로,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본다..</p>	<p>제4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----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공무원임용령”은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</p>	<p>제4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----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 임용</p>

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령」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무원(이하 “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공무원”을 “서울특별시 공무원(이하 “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”을 각각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”을 “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”을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“소속장관”과 “소속기관의 장”을 “소속 장관”과 “소속 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3호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”을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”으로, “행정안전부 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가목과 나목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

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5조 제1항 중 “전임계약직”을 “일반임기제”로 하고, “비전임계약직”을 “시간선택제임기제”로 한다. 같은 조례 제67조 제1항 중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비전임 계약직공무원”을 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8조의 단서 중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 제2항 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 제2조, 제3조, 별 표 2, 별표3 중 “전임계약직”을 “일반임기제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<u>공무원(이하 “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<u>공무원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
<p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</p> <p>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<u>시공무원</u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、③ (생략)</p>	<p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</p> <p>① ----- <u>서울특별시 공무원(이하 “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、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「<u>공무원여비규정</u>」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.</p> <p>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「<u>공무원여비규정</u>」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----- 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----- 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
<p>제4조(<u>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</u>)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</p>	<p>제4조(<u>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</u>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「<u>공무원</u></p>

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, 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는 “영”이라 한다)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영 제17조 、 제22조 、 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과 제28조 중 “소속기관의 장”은 “시장”으로 본다.
2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3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”는 “ 「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」 제4조 ”로 보며, “행정안전부 장관”은 “시장”으로 본다.
4. 5. (생략)
6.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, 같은 조 제1항 、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.
  - 가.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

여비 규정」 ----- 「공무원  
여비 규정」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 “소속 장관”과 -----  
-----“소속 기관의 장” -----  
-----.
2. -----안  
전행정부장관 -----  
-----.
3. -----  
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----  
-----  
-----안전행  
정부장관-----.
4.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- 가.-----  
“안전행정부장관 ----

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 
여”

나. 영 제29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

7. 영 별표 1의 규정 중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으로, 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으로,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본다.

-----”

나.----- “안전행정부장관 -----  
-----”

7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